

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12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2. 6. 14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가. 가축사육 제한구역 시행('18. 6. 11.) 이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용도를 현재 운영 중인 시설로 변경하여 적법하게 운영토록 하고 축산농가의 사육권을 보호하고자 함
- 나. 가축분뇨배출시설에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악취저감 등 축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배출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한 규정 신설
- 나. 가축분뇨배출시설에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 신설
- 다.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신설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(※ 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기타
 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 - (2) 입법예고(2022. 4. 27. ~ 5. 19.) 결과 : 의견 없음
 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를 “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법”을 “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별표”를 “별표 1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배출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현대화 시설을 갖추 경우 법 제2조에 따른 배출시설 내에서 배출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현대화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조례 제2785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 중인 자(이하 “기존 배출시설 설치·운영자”라 한다)는 개정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 그 시설이 위치한 장소가 포함된 경우라도 기존 허가 또는 신고한 내용에 따라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기존 배출시설 설치·운영자는 기존 배출시설 장소에 새로운 배출시설의 설치나 기존 배출시설의 증축을 할 수 없다. 다만, 기존 배출시설의 현대화나 개선을 통해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폐수의 발생량을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그 시설을 증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) 2018. 6. 11. 달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(달성군 고시 제2018-108호) 시행 이전에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배출시설의 증축 목적으로 2018. 6. 11. 이전에 「건축법」에 따라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용도의 건축물(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)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증축시설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이 조례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위 3년의 기간 내에 위 배출시설 및 그 증축시설에 관하여 이 조례 별표2에 따른 현대화시설을 갖추고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

허가·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·변경신고를 할 경우 위 3년의 경과 후에도 별표 1 부적용의 효력은 지속된다.

【별표 1】

달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(제3조제1항 관련)

□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범위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 -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및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경계로부터 800m 이내의 지역(다만, 돼지·개·닭·오리·메추리는 1,000m 이내)
 -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(자연·생산녹지)내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800m 이내의 지역(다만, 돼지·개·닭·오리·메추리는 1,000m 이내)
 - 제36조의 녹지지역(보전녹지),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
 - 제37조의 취락지구 및 지구경계로부터 800m 이내의 지역(다만, 돼지·개·닭·오리·메추리는 1,000m 이내)
- 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
- 「하천법」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(국가 및 지방하천)
-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에 따른 소하천구역

【별표 2】

달성군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(제3조제3항 관련)

(공 통) · 배출시설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를 하거나, 무창축사 배출구 주변에 담장(펜스 등)을 설치하여 악취 확산을 예방하여야 한다. ·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(미생물제, 생균제 등)을 배출시설과 처리시설(퇴비사 등)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.	
축 종	악취저감시설 기준
소 (젖소, 말포함)	· 배출시설은 톱밥 또는 왕겨축사 이어야 하고,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센티미터(젖소는 10센티미터) 이상 깔아야 한다. ·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(퇴비사 등)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(안개분무시설, 원치커튼 등)을 설치하여야 한다.
돼지	· 배출시설은 무창축사 이어야 하며,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(집진시설, 안개분무시설 등)을 설치해야 한다. · 처리시설(퇴비사 등)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(액비순환시스템, 안개분무시설, 원치커튼 등)을 설치하고, 밀폐된 구조로 출입구의 개폐가 가능하도록 개폐문을 설치하여야 한다.
닭·오리 · 메추리	· 닭·오리·메추리 등 가금류는 무창축사 이어야 하고, 배출시설의 바닥은 콘크리트 구조로 왕겨 또는 톱밥을 30 센티미터 이상 깔아야 하며,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(집진시설, 안개분무시설 등)을 설치하여야 한다. · 처리시설(퇴비사 등)을 설치할 경우 처리시설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(안개분무시설, 원치커튼 등)을 설치하고, 밀폐된 구조로 출입구의 개폐가 가능하도록 개폐문을 설치하여야 한다.
개·양 (염소 포함)	·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(퇴비사 등)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(안개분무시설, 원치커튼 등)을 설치하고, 처리시설(퇴비사 등)은 밀폐된 구조로 출입구의 개폐가 가능하도록 개폐문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고 한다) 제8조에 따라 -----.	제1조(목적) -----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-----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가축”이란 법 제2조제1호에 -----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-----.
제3조(가축사육의 제한 등) ①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구역은 별표와 같으며, ----- ② (생 략) 1. ~ 4. (생 략) 〈신 설〉 〈신 설〉	제3조(가축사육의 제한 등) ①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구역은 별표 1과 같으며,----- ②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배출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현대화 시설을 갖추 경우 법 제2조에 따른 배출시설 내에서 배출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. ③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현대화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8조(가축사육의 제한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·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·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
2. 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,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 지역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
3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수변구역
4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
5.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·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

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(危害)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·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한 구역(이하 “가축사육제한구역”이라 한다)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,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,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
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·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
